

NEWSLETTER 825

May 02, 20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 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 조정관세 적용 대상 축소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시행일이 확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2. 개정 내용

-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함.
- 감자칩 제조용 감자(한계수량 12,810톤)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II.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갈치 조업에 사용되는 미끼용 냉동 공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용도의 냉동 공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 명태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 냉동 공치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31일까지 22%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III. 시행일자

2023.05.01.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별표9)

[붙임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별표10)

[붙임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별표1)

[붙임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별표3)

[붙임5]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별표4)

I Contact



김찬란 관세사

T 02-6011-3026
E cl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사

T 02-6011-3048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